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98호 2009. 12. 11.

규 칙	
제59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훈 령	
제14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3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 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	--	--	--	--	--	--	--	--



규 칙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기능직공무원들의 인사적체해소 및 불필요한 직렬을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 양양 및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1]중랑구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표 직급·직렬별 인원조정

나.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2]기능직 조무(지도)원 정원 외 별도 관리 직급별 인원조정

다. 기능직 정원조정 내용

구 분	결원	정원조정(안)		증감	조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전기	△2	18	16	△2	⇒조무정원으로 변경
기계	△1	25	24	△1	⇒조무정원으로 변경
방호	△3	14	11	△3	⇒조무정원으로 변경
필기	△1	33	32	△1	⇒조무정원으로 변경
조무	1	56	63	6	수요증가로 인한 조무직 정원 조정

라. 기능직 조무(지도)원 정원조정 내용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개정전	39			5	12	22
개정후	39			28	11	

서울특별시중랑구 규칙 제59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랑구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총 계	1,179	827	27	101	224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910	616	12	90	192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5	1	1	
서기관	4	3	1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57	29	0	12	16
행정	38	22			16
시설	4	4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공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보건	2			2	
의무·약무	1			1	
의무·간호·보건·의료기술	1			1	
의무(가급)	8			8	

기관별 직렬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6급(나급) 소계	189	136	3	18	32
행정	117	91	3	7	16
세무	11	11			
행정·사회복지	21	5			16
전산	1	1			
공업	5	5			
녹지	4	4			
약무	2			2	
보건	4	1		3	
간호	5			5	
의료기술	1			1	
시설	17	17			
홍보(계약직)	1	1			

직렬별 \ 기관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7급(다급) 소계	271	178	3	31	59
행정	168	111	3	7	47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3			12
전산	3	2		1	
공업	9	9			
녹지	4	4			
수의	1	1			
약무	2			2	
보건	6	1		5	
간호	13			13	
의료기술	3			3	
환경	1	1			
시설	21	21			
통신	1	1			
교통전문요원(계약직)	2	2			
도시계획(계약직)	1	1			

직렬별	기관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8급(라급) 소계		274	186	4	24	60
행정		141	91	4	3	43
세무		27	27			
사회복지		26	9			17
전산		4	4			
공업		9	9			
녹지		4	4			
보건		5			5	
간호		11			1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시설		34	34			
통신		1	1			
교통(계약직)		1	1			
영상기사(계약직)		1	1			
보도편집(계약직)		1	1			
평생교육(계약직)		1	1			
도시디자인(계약직)		1	1			
홍보(계약직)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9급(마급) 소계		111	81	1	4
행정		54	32		2	20
세무		10	10			
사회복지		10	5			5
전산		3	2	1		
공업		5	5			
녹지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시설		16	16			
통신		2	2			
사회복지상담(계약직)		1	1			
전산교육강사(계약직)		1	1			
전산운영(계약직)		1	1			
평생교육(계약직)		0	0			
도시디자인(계약직)		1	1			
기록물관리(계약직)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행정·별정직 계	4		4	
5급(상당)소계	2		2			
행정·별정	2		2			
6급(상당)소계	2		2			
전문위원	2		2			
별정직 계	13	7	5	1		
6급상당 소계	3	3				
민방위교육훈련담당	1	1				
비서	1	1				
체육지도사	1	1				
7급상당 소계	7	4	2	1		
비서	2	1	1			
화생방관리원	1	1				
체육지도사	1	1				
광고물자료조사원	1	1				
속기사	1		1			
식품영양사	1			1		
8급상당 소계	1		1			
속기사	1		1			
9급상당 소계	2		2			
비서	1		1			
속기사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기능직 계	251	204	6	10	31
기능6급 소계	8	8			
전기	3	3			
기계	2	2			
운전	3	3			
기능7급 소계	28	28			
전기	4	4			
기계	2	2			
운전	11	11			
사무	3	3			
조무	5	5			
방호	3	3			
기능8급 소계	99	89	3	5	2
전기	4	4			
기계	8	8			
운전	34	31	1	2	
위생	4	3		1	
사무	29	23	2	2	2
조무	18	18			
방호	2	2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기능9급 소계	75	54	3	5	13
전기	4	4			
기계	7	6	1		
운전	24	13	1	3	7
농림	1	1			
위생	4	2		2	
사무					
조무	32	26			6
방호	3	2	1		
기능10급 소계	41	27	0	0	14
전기	1	1			
기계	7	7			
운전	20	11			9
위생	2	2			
조무	8	3			5
방호	3	3			

[별표 2]

기능직 조무(지도)원 정원 외 별도관리

구 분		계	8급	9급	10급
직 렬	직 류				
조 무	지 도	39	28	11	

- ※ 조무(지도)원은 정원 외로 별도 관리함(자연감소 될 때 까지)
- ※ 조무(지도)원 자연감소로 결원이 발생하는 직급으로 결원 수만큼 하위직급에서 승진임용은 가능하되, 총원을 증가시키는 신규총원 등은 불가함.

훈 령

서울특별시중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0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 제안이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에 대하여 면책요건 심사를 통해 징계책임 등을 감면하고, 행안부 훈령인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적극행정 면책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장 제3조)
- 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장 제6조)
- 다. 면책 제외 및 가중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장 제7조)
- 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장 제9조)
- 마. 면책심사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장 제13조)
- 바. 처분대상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장 제17조)
- 사. 처분사유, 처분권자,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감사규칙」(이하 “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감사규칙”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의 “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감사규칙 제26조의 신분상 조치, 제27조의 재정상 조치, 제28조의 행정상 조치 및 시정·주의요구(시정사항은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주의사항은 기관주의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국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면책 대상자) 면책 대상자는 “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제6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면책 제외 및 가중조치)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② 제1항제1호의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의 정도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면책제도 통지 등)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다음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 실지감사 통지서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예시안)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서울특별시중랑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면책심의 위원회

제9조(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감사원, 서울시 등에서 징계처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구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적극행정 면책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위원은 구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감사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면책심의 대상자가 5급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대상의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적극행정 면책요건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 및 부작용
2.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3.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며, 해당 업무처리에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시급성·불가피성
4. 그 밖에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 제6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 (이하 “면책요건”)에 따른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 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사유가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조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제14조(면책심사 절차) ① 감사실시기관의 감사부서에서는 제13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행정기관으로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 담당공무원 및 면책심의 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7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구 분청 및 소속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해당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8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요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부서)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에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9조(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떨어뜨리게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부서)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20조(처분권자) 제17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구청장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기관 또는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훈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22조(기록유지) 구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와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공공감사기준」 과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감사를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

수신 :

발신 :

소속	직급	성명	비위요지	조치계획	근거법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관계자	기관명	소속부서	직	성명
제 목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 (면책요건 충족여부)				
<input type="radio"/> 공 익 성				
<input type="radio"/> 타 당 성				
<input type="radio"/> 투 명 성				
<input type="radio"/> 종합의견				
<input type="radio"/> 기 타				

이상과 같은 사유로 면책 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성명 (인)

※ 첨부서류 : 매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감사담당관 : 직·성명

(인)

일련 번호	소 관 청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제 목	감 사 자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 및 요건별 검토의견			
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		검토의견	
○ 공익성			
○ 타당성			
○ 투명성			
○ 종합 의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 명						
심사대상자	소 속 기 관		직 위 (직급)		성 명	
심 사 결 과						
서울특별시중랑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위 원 장			□□
			부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간 사			□□

[별지 제5호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번호	접수년월일	처분년월일	심사대상자			심사결과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별지 제6호서식]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처분권자

(직인)

